

의안번호	2219013
의 퇴 인	박희승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 계 번호	26C2549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9조의2 (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 등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·관리하고,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·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 (제3항) 제1항에 따라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한 자 또는 그로부터 봉사시간 실적을 양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복지시설 등에 해당 봉사시간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(제4항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, 노인복지시설, 노인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5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 (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(케어뱅크) 사업을 통해 자원 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, 해당 봉사자가 65세 도래 시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
 - 2026년 예산에 13억 2,400만원이 편성됨
 - － 편성 내역은 수행기관 사업비, 관리시스템 운영·관리비, 돌봄봉사자 인정보상제도 운영비, 관련 위원회 운영비 등임
 - 현재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·도에서 60개소의 수행기관이 운영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케어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전보다 사업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9조의2제6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할 돌봄 활동의 범위, 봉사시간 양도의 요건 및 절차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 발생 항목 및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